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 01. 11.

개정: 2011. 11. 18.

개정: 2018. 01. 02.

개정: 2018. 04. 24.

개정: 2020. 06.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가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해당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등록금산정에 필요한 자료(대학 예·결산서 등 회계관련 자료, 각종 사업계획관련 자료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및 동문,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위원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6.23.)

1. 교수 : 2명

2. 직원 : 2명

3. 학생 : 3명(학부 2명, 대학원 1명)

4. 학부모 및 동문 : 1명

5. 전문가 : 2명(외부 전문가 중 1명을 회계·경영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학생지원처장, 총학생회 회장, 총동창회 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교수 1명은 교수협회의 추천, 위촉직 위원 직원 2명은 직원협회의 추천, 위촉직 위원 학부 학생 1명은 총학생회의 추천, 위촉직 위원 대학원 학생 1명은 대학원 원우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외부전문가 2명은 총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 중 1명을 회계·경영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20.6.23.)

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0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개정 2020.6.23.)

⑥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의 5의 전문가는 학교법인 대구학원(이하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 또는 법인 관련 인사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자와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외부 관련 전문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공개)**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년도 등록금 책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회의 일자 및 안건은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자와 이메일(E-mail) 등을 통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개정 2020.6.23.)

⑤ 회의록은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